

제27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회의 2021. 4. 23.(금)

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 
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#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

## 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14일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최근 ‘n번방 사건’ 등 각종 디지털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성(性)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어,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보호·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5조)
- 다.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(안 제7조)
- 라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여성아동과

라. 입법예고 : 2021. 4. 15. ~ 4. 21.(6일간) / 의견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.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고, 안 제7조는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, 안 제8조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위탁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두었으며, 안 제9조에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과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조례라 여겨집니다.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 예상액은 연평균 1억원 이내임.

### 4. 작성자

북지국 여성아동과장 이인애

**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의3(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촬영물등"이라 한다)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

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,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.

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(求償權)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의 내용·방법,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